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새 최근 세법 개정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3.7.1.이후 공급분부터)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4.7.1.이후 공급분부터)
-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인하 및 전송기한 연장) '19.1.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十 正	내 용	가산세율	내 용	가산세율
지연전송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0.5%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시	0.3%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1%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시	0.5%

■ 전자계산서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1.이후 공급분부터)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4.7.1. 이후 공급분부터)
-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인하 및 전송기한 연장)
 - 가산세 인하: '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송기한 연장: '20.1.1.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лы	전자계산서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의무발급자	내 용	가산세율	내 용	가산세율
기여거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발급일의 다음 날이	0.5%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	
지연전송 가산세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지난 후 과세기간(사 업연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0.1%	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시	0.3%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발급일의 다음 날이	1%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지난 후 과세기간(사 업연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0.3%	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시	0.5%

^{* &#}x27;23.7.1.부터 1억원 이상, '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공제한도	적용기한
전자 세금계산서	직전 과·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22.7.1.이후 공급 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전자 계산서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22.7.1.이후 공급 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 &#}x27;23.7.1.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적용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시 유의사항

▶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외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 민

의즈며	드	しつよると	서비스르	이용하 스	이ㅇㅁㄹ	회원가입은	可人
ゼグラ	$\overline{}$	477	시비스크	이뜻일 구	31	외전/[답는	4

구 분	회원 가입 방법	인증서
개인사업자	① 혹은 ② 중 택일 ① 주민등록번호(개인)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전환하여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 ② 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 이용 가능	발급단계 인증 시 공동 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용 또는 사업자범용), 보안카드 중 하나 필요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	서는 이용 불가

▶ (부서사용자 ID 신청·이용)

홈택스에서는 하나의 ID로 회사 내 여러 명이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 여러 명이 각자의 PC에서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사용자 ID 신청· 이용 권장
 - * 부서사용자 ID 신청·이용방법 : p213 참고

▶ (총괄납부 사업자 관리)

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종사업자가 주사업자에게 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 주사업자는 조회권한 동의된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총괄납부 사업자 관리 : p200 참고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만 자료 전환이 가능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 관련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에 전 송 사실 여부 확인 가능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전자(세금)계산개 발급절차

1.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 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지문 인 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공동인증서·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 pll-14 참고
2.	회 원 가 입	•국세청 운영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p77 참고
3.	발 급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愛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p97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4.	전 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p19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5.	조 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에서는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pl74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6.	부가가치세 신 고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방법 pl85 참고(전자계산서도 동일)

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제도의 의의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 추진배경

-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
-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적발 등 세무거래 투명 성 확보
- ③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 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¹¹ 또는 ASP²¹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1)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 기업 전체의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
 -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개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 ①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 으로 발급*²하는 세금계산서*³를 말함

*1 전자적 방법(附令 제68조 ⑤)

-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
-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

*3 세금계산서

-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제50조 ①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 자체를 전달해야 함
- ②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 이 내재
- 전자세금계산서 법정서식은 XML파일 자체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물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
 - ▶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승인번호 24자리와 '전자세금계산서' 표제를 표시하도록 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 가능
- ③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합계 1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24.7.1.부터는 8천만 원 미만)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 동	
발 급 및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종이로 발급	
보관형태	•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 동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 택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 이 익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좌 동	
서 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실제인감(필수요건 아님)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 ① 표준화 필요성
- 사업자들이 구축한 다른 종류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RP, ASP)간 세금계산서의 호환성 확보 및 검증방식 일원화를 위해 필요

② 표준화 대상

- (항목 등 파일형식) 영문명칭, 속성, 크기, 코드번호, 필요성 여부, 파일형식 등 세금계산서에 기 재하는 항목에 대한 정의
-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Digital Signature 방식으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 (전송방식)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형식으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 채택
 - *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 >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를 위한 개발지침. ②전자 세금계산서 표준화 인증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③ 전자세금계산서 서버인증서 공개키 참조

③ 승인번호 체계

- 승인번호는 작성연월일(8자리 숫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번호(국세청에서 8자리 부여), 발급 일련번호(숫자와 영어 소문자로 구성된 8자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 자가 자체 부여)로 구성
- 표준인증번호 8자리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스템을 표시
 - 8자리 중 앞의 2자리 숫자는 홈택스 10, ARS 20, ASP 41, ERP 4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 서식 50, 모바일 70, 세무서 대리발급 90으로 시작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附法 제32조 ②、附令 제68조 ①)
-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4.7	직전 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 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의무발급통지 기한
2020년	3억원	2021.7.1.~2022.6.30.	2021.5.31.
2021년	2억원	2022.7.1.~2023.6.30.	2022.5.31.
2022년	1억원	2023.7.1.~ 계속	2023.5.31.
2023년	8천만원	2024.7.1.~ 계속	2024.5.31.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 *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 A가 '23.8월 공급가액 (과·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발급 의무 적용

✔ 꾸요상당사례

Q1. 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에 발급의무 면제금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예)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욕탕업(세금계산서 면제대상)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

업과 욕탕업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의무 기준금액 판단

Q2.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정 기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 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3.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차이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 필요성
- 홈택스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 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위·변조 방지
-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은 모두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발급 및 갱신을 할 수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인증서

- 발급가능 공동인증서 : 사업자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ASP용 공동인증서
 -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홈택스 회원가입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회원가입
7	전자세금계산서용	가 능		
	사업자 범용	가 능		
	개인 범용	불 가	가 능	가 능
	ASP용	가 능		
	금융기관용	불 가		

○ 공동인증서 구분

공동인증서의 구분은 공동인증서 선택란에 확인되는 [용도]에서 공동인증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까(세금)계산서 보안카드

※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조회할 수 있는 카드이며, 전화 (ARS 126-1-2) 및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조회에도 이용 가능(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카드임)

● 보안카드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령 가능
 - ▶ 보안카드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함
 - ※ 법인이 신청할 경우 서식의 서명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인인 감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 관할세무서가 아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신청 가능
 - ▶ 보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연도별 갱신 없이 사용가능

● 보안카드 이용

-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ARS 126-1-2-1)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가능
 - *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 지문 등 생체인증

※ '21.2월부터 독자적인 사무실 또는 PC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 자가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문·얼굴(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손택스 접속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손택스 앱에 지문·얼굴 최초 등록 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ID와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
 -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
 - *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문', 아이폰에서는 '얼굴(안면)' 인증 가능
 - ▶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 는 ID가 아닌 지문 등 생체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접속)해야 함
- 지문·얼굴(안면) 인증 등 등록절차
 - ① 발급유형선택 ② 생체인증 발급 ③ 발급내역 확인
-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 ① 생체인증 접속 방식 선택 ② 생체인증 등록 ③ 생체인증 접속

✔ 주요상담사례

Q1. 금융기관용공동인증서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안되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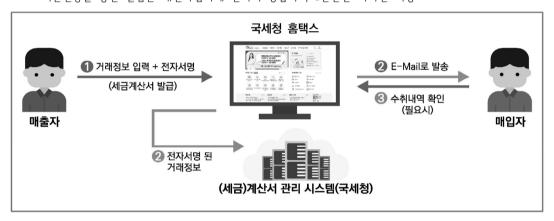
-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진행되더라도 발급완료을 위한 전자 서명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 불가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ASP용 공동인증서

Q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공동인증서가반드시있어야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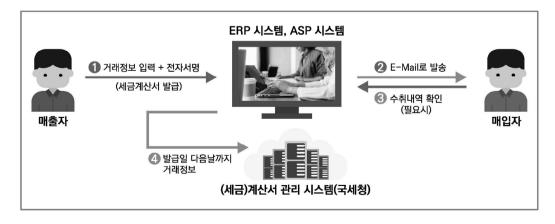
- ▶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가 아닌 다른 민간 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2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얼굴(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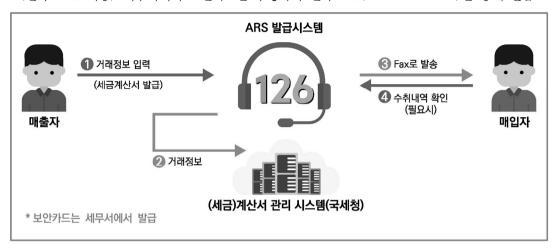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발급
 - ②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 ③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공동인증서 · 보안카드 ·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
 -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2021년 2월부터는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어도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 지문인증을 통한 발급은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공급가액 1천만워 이하만 가능



- * 발급건수가 적은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전송
-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한 발급



- * 자체구축(ERP) 또는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주로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사용
- ③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아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1-2-1)를 통해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 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주요상담사례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 국세청이 구축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의 ASP사이트나 자체 ERP 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ARS 방식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으며,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 청을 통해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ASP또는 발급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 공급자가 ASP나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자 · 매입자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매출 · 매입처별 합 계표 조회는 전송일 다음 날부터 가능)

Q3. 대리발급신청은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만가능한지

▶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계약서·입금증 등 거래증명을 첨부하면 세무서 직원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附令 제68조⑫)

- ※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수신자가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개봉여부 에 불문하고 도달된 것으로 봄
-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 달한 때 발급 완료
-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附令 제68조 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附法 제34조)
-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附法 제34조 ③)
 -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附法 제32조 ③, 附令 제68조 ⑦)

6.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 무 면제(附法 제54조 ②)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附法 제71조 ③ 단서)
- (발급세액공제) '22.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①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②가이과세자('23.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적용
 - ('19.1.1. 이후 거래분)

=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 제*
발급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예) '23. 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전송	0.3%	해당없음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예) '23. 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미전송	0.5%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附令 제75조 제7호)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 부과
- ('14.1.1.~'18.12.31. 거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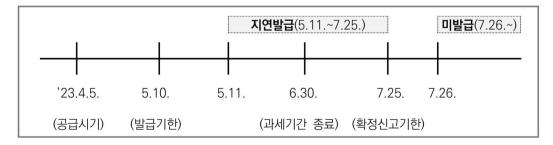
구 분		1 4 0	'14.1.1.~'	16.12.31.	'17.1.1.~'	'17.1.1.~'18.12.31.	
		내 용	발급자	발급자 수취자		수취자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¹⁾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²⁾	2%	매입세액 불공제 ²⁾	
발급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¹⁾ 발급	1%	1%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 계산서 발급	1% ('14년 2%)		1%		
73.5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 일까지 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1.6.~'17.7.11.까지 전송	개인0.1% 법인0.5 %	-	0.5%	-	
전송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 일까지 미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1.6.~'17.7.11.까지 전송	개인0.3 % 법인 1%		1%		

- 1) '16년 이전 거래분은 과세기간 내임(6월분과 12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임)
- 2) '16년 이전 거래분은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1% 부과

● 가산세 사례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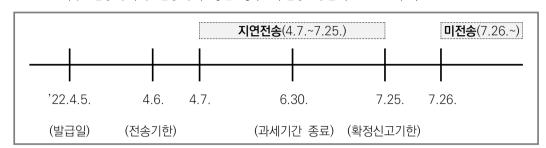
< 사례1 > (발급관련) 2023. 4. 5.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경우

- ▶ 5.11.~ 7.25.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1%) 부과
- ▶ 7.26.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부과



< 사례 2 > (전송관련) 2023. 4. 5.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4.7.~ 7.25.에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0.3%) 부과



▶ 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가산세(0.5%) 부과

✔ 주요상담사례

Q1.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 구분

▶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 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Q2.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 관련 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 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또는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수신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에 전송 후 거래처 요 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하여도 됩니다.

Q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전송위반가산세의 중복적용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7. 임대업 영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8. 공급받는자를수정하여수정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기재부 부가세제과-538, '14.9.5.)

7.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지연) 발급 및 미(지연)전송 관련 가산세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 * 발급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을 비교하여 미(지연)발급 금액 산출
- * 전송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에 대해 작성일자(공급시기)와 국세청 전 송일자를 비교하여 미(지연)전송 금액 산출

미발급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2%
-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신고서식 (64)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2%)

- 지연발급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 금액: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신고서식 (62)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1%)
- 이 미전송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5%
 - ▶ 과소신고 금액: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신고서식 (66)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5%)
- 지연전송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3%
 - ▶ 과소신고 금액: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신고서식 (65)번)
 -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3%)
 - ※ 미(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시 전송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점검

-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세금 계산서 매출액 기재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성실 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액

구 분	내 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①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 계산 서 매출액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신고서 서식 (1)+(5)+(33)+(35))
무(과소) 신고액 (①-②)	매출액 신고누락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사례
- ※ 국세청 홈택스에 수록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내역을 대사하여 불일치 자료에 대한 매출액 신고누락 사례 등

- ▶ (사례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 (사례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 (사례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일부만 신고
- ▶ (사례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6)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분 신고누락
- ▶ (사례8)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고누락

사례 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학원에 연수원 임대를 하고 '22년 1월부터 매월 75백만원, '22년 1기 합계 450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231 백만원만 신고하고 219백만원 신고누락
 - ☞ 공급받는 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나 '23. 2. 8. 사업장 현황신고 시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자료를 대사하여 △△학원에 대한 임대료 신고누락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2. 공사금액을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 대금 230백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나 신고누락
- (거래처 신고내역 확인) 거래상대방은 ◇◇기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 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음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일부만 신고(거래처 매입세액공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23년 1기 (주)◎◎테크 등 3개 업체에 제품매출 등 432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 경정내역 · 납부내역 등 확인한 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만 매출 신고
 - * (주)◎◎테크 외 1개 업체 367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누락
 - ☞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공급받는 자는 전액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처 ■■군청 "도민체육대회조경공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건 129백만원 신고누락
 - '23. 6. 19. 정상 거래분에 대하여 처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23. 8. 28.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비고	거래처
'23. 6. 19.	'23. 6. 19.	129백만원	누락	■■군청
'23. 6. 19.	'23. 8. 28.	-129백만원		(3××-83-××××)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처 (주)◎◎뷰티 "건강식품" 외 10건 전자세금계산서 367백 만원 신고누락
 - ☞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후 신고누락, 신고누락분에 대해 (주)◎◎뷰 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 목	거래처	비고
'23. 4. 3.	'23. 5. 12.	216	건강식품		
'23. 5. 29.	'23. 7. 24.	27	건강식품	(z) () () (z)	누락
	외 8	124		㈜◎◎뷰티	〒号
(합계)		367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6.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체육회(30×-8×-×××××) "행사대행금"에 대한 전자세 금계산서 1건 100백만원 신고누락
 -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이벤트 업체로 '23. 5. 8. 행사대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으나 국세청에 미전송하고 매출 신고누락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 목	거래처	비고
'23. 5. 8.	'23. 5. 8.	100	행사대행	◎◎체육회	누락

- (거래처 신고내역 확인) ◎◎체육회(비영리법인)가 '23. 7.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이벤트업체와 거래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 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3.4.28.) 2장 117백만원(발급일자 '23.7.8.) 신고누락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주)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한 바,
 '23.4.28.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3.7.8.에 발행하고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 '23년 1기 매출누락 경정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8.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후 신고누락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는 "사출 성형기 외" △117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수정 발급·전송
 - (주)○○은 수정발급 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취소로 경정청구 후 환급
-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확인) 거래처 (주)□□의 신고내역 확인한 바, 공급받는 자는 당초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며,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02 전자세금계산서 이해 확대

1. 매입자 중심의 발급형태와 해결책

- 정상발급과 매입자 중심 발급 비교
- (정상발급)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 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는 형태

- (매입자 중심 발급)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 하는 형태
 - * 이런 발급 형태를 업계에서는 "역발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매출자가 세 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와 혼돈을 일으키는 등 올바른 표현은 아님

구분	기재사항 작성자	전자서명자	세금계산서 발급자	전송책임
정상적 발급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매입자 중심 발급	매입자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 매입자 중심 발급의 경우 발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발급과 전송책임은 매출자에게 있음

● 발급채널 강요에 대한 해결방안

- 시스템사업자의 전용수신함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매출·매입 자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입자의 발급채널 강요 유도
 - ▶ 시스템사업자(ERP·ASP)는 홈택스에 전용수신함과 자신의 공동인증서 공개키를 등록하여 자 료공유 및 변동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① 시스템사업자는 홈택스에 전용수신함과 자신의 공동인증서 공개키를 등록
- ② 거래 시 매출자는 매입자의 수신함과 매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전용수신함으로 전자세금계 산서 메일 발송
- ③ 시스템사업자는 자신의 전용수신함으로 수신된 세금계산서를 복호화하여 매입자 계정에 자동 반영
 - * 자료공유 제도에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시스템사업자(ERP·ASP)의 전용수 신함과 공개키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일정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등 제재
- 발급채널 강요가 지속되는 경우 신고를 받아 행정지도 및 시스템사업자 등록취소 등 조치
-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 당강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 접수된 신고서는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 이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스템사업자 등록취소 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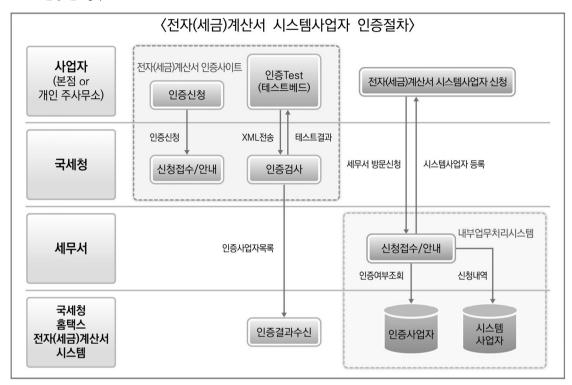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 ※ ASP, ERP 등 해당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도록 국세청고시 등에 의해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
 - 동 고시에 시스템사업자 등록절차 및 시스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규정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11.15.)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자(세금)계산 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사업자(ERP 구축자, ASP사업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준용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절차
- ① 국세청 표준인증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ERP, ASP)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고시(제2018-42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표준적 합성 검증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 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함
- ② 세무서 등록
- 국세청 표준인증 후 국세청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의 시스템만이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국세 청 전송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툎〉@ï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7호, 2023.9.1.)
-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
 -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 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 ▶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 자료 관리부를 작성ㆍ비치
- ② 이용자의 보호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 관리를 해야 하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내역을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③ 등록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가능
 - ▶ 국세청고시에 규정된 발급·전송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 동일 매입자에게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반송된 경우

-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각종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 ▶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하는 경우
- ▶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국세청고시에 규정에 따른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업무처리 흐름도

등록신청서 접수

- 본점(개인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 세적담당자 접수
 -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등 첨부
 - 국세청 표준인증 여부 접수 전 확인
 - 처리기하(14일)

▼

등록요건 검토 및 현장확인 실시

- 附則 제50조 ③에 따른 등록요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방국세청 전산 관리팀과 함께 현장확인 실시
- 자본금 2억원 이상, 조세범 여부, 체납·결손여부
- 시스템 보유, 보안성 확보, 수명서 수집

▼

결과보고 및 전산처리

- 현장확인 결과보고, 전산처리
 - 현장확인 내부보고 → 등록 or 거부 등 결정
 - 지방국세청 전산확인 담당자 처리결과 입력 등

▼

결 과 통 지

- 결과통지서(등록 후) 출력하여 사업자에게 통지
- 등록번호 8자리, 전송할 홈택스 시스템 URL주소 안내

▼

시스템사업자 관리

- 시행규칙 및 고시사항 이행여부, 취소요건 등 관리
 - 자본금 2억, 조세범, 3회 이상 체납, 3년 계속 결손
 - 전송오류, 지연전송, 2과세기간 계속 전송실적 유무
 - 이행상황점검, 부당한 발급채널 강요 신고 등

▼

취소 및 포기

- 사후관리 결과 등록취소 및 신청에 의한 등록포기
 -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취소
 - 폐업 등의 경우 신청에 의해 등록포기(재등록 제한 없음)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나「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1항에 의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종이형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 도입배경

○ 2010년부터 기존의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어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각 발급해야 하는 상황 발생으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 증가

● 적용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열공급,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사업부 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등록한 경우(附令 제68조 ⑨)
- (전자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 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所令 제211조 ⑥)
 - * 적용대상 사업부문 외의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제출방법

ㅇ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절차

- ①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에 대한 표준인증 획득(표준인증번호는 50으로
- ②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 록

03.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요약

1. 세금계산서 개요

의의

○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 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로 송장, 청구서(영수증), 증명서류, 과세자료 등 역할

● 발급의무자

- (원칙)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수증 발급대상(附令 제73조)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附令 제71조)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附法 제36조 ① 개정으로 직전 연도의(환산)공 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
- (예외)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예 외적으로 발급 가능(附令 제69조)
 - * 예)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력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전기사업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상가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주의

필요적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기재사항	세액, 작성연월일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 종이세금계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서명(일명 도장 날인)은 필수적 사항이 아니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단순한 서명 뿐만 아니라 위·변조 확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반영된 필 수 사항임

2.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 가. 일반적 기준(附法 제15조)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입자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
- ③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附令 제28조)

- ① 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할부판매 정의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
 - * 장기할부판매 정의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③ 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반환조건부 판매 :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에 의해 공급(예 : 시용판매)
 - * 동의조건부 판매 : 거래상대방이 구매동의를 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에 의해 공급(예 : 검수 판매)
-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판단(지급날짜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개월에 관계없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 기이나 반드시 기성청구 행위가 있어야 함
-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비교

구분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 조건부공급
기본개념	인도 후 대금회수	인도 전 대금회수
회수요건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3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기간요건	1년 이상	6개월 이상

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적용하되, 위탁자 또는 본인을 모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적용

●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

- 가. 일반적 기준(附法 제16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附令 제29조)
- 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일반적 기준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法 제34조 ③ 제1호)
 - * 1.1.~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附法 제34조 ③ 제2호)
 - * 1.1.~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附法 제34조 ③ 제3호)

●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
 로 본다.(附法 제17조)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附法 제17조)
 -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 발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미래 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

4. 수정세금계산서

의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수정사유별 작성방법(附令 제70조)

-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 ▶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 ▶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 ▶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 ▶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 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개설된 그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 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⑩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 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이후)

구 분			작성	성·발급방법		바그기술
	т т		방법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발급기한
	환 :	환입 금액에 대하여 환 입 음(-)의 세금계산서 환입된 날 /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안됨 		해 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1장과 영세율 사후개설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작성 일자		처음 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소급	착오에 이중빌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작성일자 작성일자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세 <u>율을</u> 적용한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개정] '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	----------	-----	----	-------	------	-----

78	ILO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구분	사유 	여부	사유
작성일자가 소급 안되는 경우	환입,계약해제, 공급가액변동	부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 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없음
작성일자가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부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소급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여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 우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해야함

✔ 주요상담사례

Q1. 발급·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삭제나정정가능여부

거래상대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 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시 당일에 한해 제공되는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하시면 착오 기재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됩니다.

Q3. 계약의일부가해제된경우공급가액변동으로수정세금계산서발급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제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감액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예) 처음에 10만원 재화공급 후 3만원 해제 시 → 3만원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Q4. 대금을받지못한경우에도세금계산서취소불가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합계표 작성방법

- 제출대상자와 제출시기(附法 제54조)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화급·예정·확정 신고 시 제출
 -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제출 가능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 ▶ 「면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 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 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 경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합계표·통계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

-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말의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 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
 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 단,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
- ③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④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 ▶ (매출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 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
 - ▶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 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

✔ 주요상담사례

Q1. 합계표구분기재를잘못한경우의불이익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 적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할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적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합계표 불성실)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전송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에 해당(2015.12.31.이전재화·용역거래분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전송된 경우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2016.1.1.이후 재화·용역 거래분 해당)

발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20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

Q4. 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금액과합계표금액차이발생이유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홈택스 합계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및 ASP·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전송 당일 목록조회는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월일~월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다 인적사항													
 사업지 						(② 상호	호(법인도	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	간					(⑥ 작성	성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월 일			
2. 매출사	ll금계산서 경	통합계												
_		⑦매출	0 77		9) 공급기	 액				① 人	네 액		
Т	그 분	처수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7	천	일
ē	가 계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자 등록번호						L,							
다음달	발급		간(또는				_		ПН∠	수, 금액	드으			
11일까지	주민등록번		1일까지 -		l 전송돈	! 전자서	I금계	"-			。 인하고 :	기재		
전송된	호 발급분	산서	금액을 기	재							_ '			
전자세금 계산서	소 계													
위 전자세금	사업자 등록번호													
계산서	발급분		I금계산서						매스	그애 드	등은 3번			
외의	주민등록번	_	종료일				-				여기자			
발급분	호 발급분	전송도	지 않은	전자세금	경시산서	금액을	기재		0 112					
	소 계													
3. 과세기 음)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	1일까지	전송	된 전지	·세금계	산서 9	외 발급	분 매	출처별	명세((합계금	[액으로	르 적
①번호	①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 매수			공급가					비 고			
	0 12-	(1120)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_				_								
3		가 발생할 경		_		발							-	
5	생할	수 있으므로	보 성왁히	왁인하고	그 기재									
		I .	1	1			I				1	1	1	1

① 관리번호(매출)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짝성 요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월일~월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	<u>l</u> 적사항												
①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6) 작성	성일					
			년	월 일	~ 년 9	월 일						년	월 일
2. 매입세금	계산서 총합계												
		⑦매출			9	공급기	-액			() 세 ⁽	 객	
구	- 분	처수	8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 계												
과세기간	사업자												
종료일	등록번호												
다음달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또는 예정	정신고기:	간) 종	료일 [음						
11일까지 전 송 된	주민등록		까지 국서	-	_			_{"~}		·, 금액	-	,,,,,,	
전공된 전자세금계	번호 발급받은	산서 금역	백을 기재						급택스 어	서 확인	한고 /	'사1	
산서	분	L											
발급받은분	소 계												
	사업자												
-,	등록번호												
위	발급받은 분												
전자세금계	주민등록	 종이세금	계산서와	과세기	간(또는	예정신	고		Ш人	금액 등	റ ചല	ŀ	
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번호 발급받은	기간) 종	료일 다음	: 달 11	일까지	국세청	성에						
월급받는군	분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 명세를 집계하여 기재								' I			
	소 계	•											
* 주민등록	번호로 발급받은 시	네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일]세액 공	¦제를 받	을 수	있는 서	_ 금계산시	네만 적습	: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	 달 11일까	 지 전송된	 리 전자	세금겨		의 발	급분 [개출치'	 별 명사	 (합계	금액으	 로 적
음)	0		0.				. –			_ 0			·
							_						日
(11)번호	⑩ 사업자	③ 상호	(4)매수		(15) -	공급가역	객			(16)	세액		고
	등록번호	(법인명)		조	실악	백만	천	일	조 수	실억 백	만 친	널 일	
1													
2	_												
3	오류가 발생	할 경우 가신	산세 등 불	이익이	발								
4	생할 수 있으	으므로 정확히	키 확인하고	그 기재	\bot		-						_
5	1				_								

① 관리번호(매출) -

04.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1. 계산서 개요

의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 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

법령	주요 면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혈액 -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 -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제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광고는 제외) - 금융·보험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저술가·작곡가 등 인적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용역 등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 발급의무자

- (원칙)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예외)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所令 제211조 ②)과 관련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所令 제211조 제2항) >

구분	내용
1호	-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호	-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호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기재사항(所令 제211조 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 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3. 공급가액
- 4. 작성연월일
- 5. 기타 참고사항

● 계산서 발급시기(所令 제212조 ②, 法令 제164조 ①)

- 계산서 발급시기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함
 - (원칙)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월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 계산서 발급 특례 기한(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 (사례 1) <u>'23.6.1. ~ '23.6.30.</u>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u>'23.6.30.을 작성연월일</u>로 하여 <u>'23.7.10.까지</u>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u>'23.7.11.까지 전송</u>
- ◎ (사례 2) <u>'23.6.1. ~ '23.6.10.</u>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u>'23.6.10.을 작성연월일</u>로 하여 <u>'23.7.10.까지</u>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u>'23.7.11.까지 전송</u>
- ◎ (사례 3) <u>'23.6.1. ~ '23.6.25.</u>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u>'23.6.25.을 작성연월일</u>로 하여 <u>'23.7.10.까지</u>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u>'23.7.11.까지 전송</u>

● 수정계산서 발급(所令 제212 ②)

-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 수정계산서 발급방법 : p126참조

● 계산서합계표 제출

-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해야 함(所令 제212조 ①, 法令 제 164조 ④)
 - 다만,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한 계산서나 국세청장에 전송한 전자계산서는 제출 생략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그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0.3%) 가산세 부과(所法 제81조의10 ①, 法法 제75조8 ①)

2. 전자계산서 제도

● 도입배경

- 2013.4.1.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자의 「발급여건, 납세편의, 면세거래의 투명성 효과」등을 감 안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추진배경

-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 편리성 제고
 - ▶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는데 따르는 불편 해소
-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토록 함
 - ▶ 무자료 거래 및 소급발급 관행 등을 사전에 차단
- ③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미 구축
- 2013.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간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

자가 전자발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전송절차가 동일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발급의무 대상자(所法 제163조 ①, 法法 제121조 ①)
- 법인사업자는 2015.7월부터, 개인사업자는 2015.7월부터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음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 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③ 종전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 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크 IF어설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O,×)			
十正	사업형태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0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를 의무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0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 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24.7.1.이후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	0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 자계산서 발급의무 → '24.7.1.이후 8천만원 이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매·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 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서면-2016-법령해석소득 -5987)
- 총수입금액 기준 발급의무 (단일사업장 가정)
 - 예) 2022년 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2023.7.1. 이후 발급 시)

구분	총수입금액	과세공급가액	면세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억원	0억원	1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2	1억원	1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3	1억원	0.5억원	0.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4	0.5억원	0억원	0.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사례5	0.5억원	0.5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사례6	0.5억원	0.25억원	0.2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

- 예) 2023년 총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원인 경우(2024.7.1. 이후 발급 시)

구분	총수입금액	과세공급가액	면세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0.8억원	0억원	0.8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2	0.8억원	0.8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3	0.8억원	0.4억원	0.4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4	0.5억원	0억원	0.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사례5	0.5억원	0.5억원	0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사례6	0.5억원	0.25억원	0.25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 사업장 기준 발급의무

- A, B 사업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사업장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7억원	4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2	3.5억원	3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3	1.5억원	0.9억원	0.6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원인 경우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2억원	1억원	1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2	1.5억원	1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 B사업장 발급의무 ×
사례3	0.9억원	0.5억원	0.4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4.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3)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所令 제211조의2 ⑥, 法令 제164조 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 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 ②, 法令 제164조 ①)

○ 원칙적으로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계산서 발급 특례 기한(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所令 제211조의2 ④, 法令 제164조 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所令 제211조의2 ⑤)
-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3. 공급가액
- 4. 작성연월
- 5. 기타 참고사항

5.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 ①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한 경우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所令 제208조의2 ⑤, 法令 제158조 ⑤)
- ② (신고간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 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작성 불필요(所法 제 163조 ⑤, 法法 제121조 ⑤)
- ③ (발급세액공제) '22.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 가산세('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가산세 부과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발 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1%	-

	허위 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 이후)	
전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연도별· 사업자별로	-
송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다름 (하단표 참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所法 제81조의10 및 所令 제147조의6)
-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 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국세기본법 제49조)
-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 미·지연전송 기한연장 적용시기는 '20.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 ▶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계산서 발급시기는 준수해야 함

< 전송 의무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1%	1%	1%	1%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1%	0.5%	0.5%	0.3%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_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3%	1%	1%	0.5%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23.7.1.부터 적용되며, '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됨

● 지연전송, 미전송 구분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하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송기하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 법령근거 : (개인) 소득세법 제81조의10 ①5.6호. (법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5.6호
-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개인과 법인의 미(지연)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시

-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A가 '22.3.10. 전자계산서 발급
 - → '22.3.12, ~'23.1.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3.1.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 전송이 됨
-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2.7.1.~'23.6.30.) B가 '22.8.3. 전자계산서 발급
 - → <u>'22.8.5.</u> ~ <u>'23.7.25.</u>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u>'23.7.26. 이후</u>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 송이 됨

6.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 ⑤, 法法 제121조 ⑤)
-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
- ㅇ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거나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생략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 분)란에는 「매출처(매 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 ▶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발급받은 분)란"에는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 경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합계표·통계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 한 가산세 부과

구 년	<u> </u>	내 용	가산세율
매출·매입처별	미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	미제출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법인세·소득세) '18.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 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 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짝정 요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19. 3. 2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지	사등록번호				② 상호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	장 소재지			
⑤ 거래기	기간				⑥ 작성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2. 매출기	계산서 총합기	4							
		⑦매출	6.33			⑨ 공급	·가액		
_	구 분	처수	⑧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Ť,	합계								
과세기간	사업자								
종료일	등록번호								
다음달	발급분						'		
11일까지	주민등록번		간 종료일 다음 달 				·, 금액 등은		
전송된	호 발급분	→ 에 선	송된 전자계산서 금	액을 /	⁷ 재	"옴택스"어 	서 확인하고	기재	
전자									
계산서 발급분	소 계								
일표판									
	사업자								
위	등록번호								
전자계산	발급분	종이계	 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		701		
서 외의	주민등록번	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기	지 않은	· 전자계산서		금액 등은 3번		
발급분	호 발급분	금액을	기재	기재		당시(=	를 집계하여 기재		
	소 계					<u> </u>			
3 JFM12	기가 조근인	다으 단 1	1일까지 전송된	저자	' 게사서 이 반근	구보 매춘처별		그애ㅇㄹ	크 저으)
J. 4/11/		9621 1	12/1/1 202		게다시 되 글	크正 메르시티			- 7 <i></i> /
O.11.7	① 사업자	⑫ 상호				⑭ 공급가액			비고
⑩번호	등록번호	(법인명)	[3매수			, m)1	-1	0)	
					십억	백만	천	일	
1									
3					_				
4			경우 가산세 등 불여		발				
5	생활	날 수 있으므로	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⑤ 관리번호(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짝정 요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19. 3. 2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지						② 상호((법인	<u></u>				
③ 성명(1	대표자)					④ 사업	장 _	소재 지				
⑤ 거래기]간					⑥ 작성'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2. 매입계산서 총합계												
⑦매출 ②매출 ⑨ 공급가액												
7	구 분	처수	⑧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Ģ	할 계											
다음딜 전 전지	간 종료일 : 11일까지 1송된 나계산서	실까지			재							
위 전자:	남받은분 계산서 외의 남받은분	일까	 계산서와 과세기간 기 국세청에 전송 을 기재						수, 금액 등은 세를 집계하여			
3. 과세기	기간 종료일	L 다음 달 1	 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사	네 외 발급	 글분	매입처발	 별 명세(합:	 계금액	으로	적음)
⑩번호	① 사업자	① 상호	(3)매수				(14)	공급가인	1			비고
	등록번호	(법인명)		3	/	십억		백만	천	일		
1												
2			*									
3			경우 가산세 등 불		발							
4	생활	할 수 있으므	로 정확히 확인하고	<u>기</u> 제								
5												

⑤ 관리번호(매출) -

7.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을 준용 (所令 제212조 ②, 法令 제164조 ①)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11-1-1-1-1-1111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

- 아래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 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所令 제211조의2 ⑥, 法令 제164조 ①)
 -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 치를 이용한 발급)
 -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 ▶ 전자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적용대상 및 방법, 등록절차)
 - ▶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

05. 주요상담사례(Q&A)

① 발급대상자와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 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 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2022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해 제2기 과 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20년	과세+면세 3억원이상	2021.7.1.~2022.6.30.	2021. 5. 31.
2021년	과세+면세 2억원이상	2022.7.1.~2023.6.30.	2022. 5. 31.
2022년	과세+면세 1억원이상	2023.7.1.~계속	2023. 5. 31.
2023년	과세+면세 8천만원이상	2023.7.1.~계속	2024. 5. 31.

^{* 2018.1.1.}이후 통지하는 분부터는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 *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이 있습니다.
 - ①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PC) 외 손택스(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시스템사업자(ERP, ASP)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③ 전화 ARS 방식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126-1-2-1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 ④ 세무서 대리발급 :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이 포함되 나요?

- ㅇ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01, 2013.10.10.)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노점, 행상. 소매업, 미용, 욕탕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홈택스[My홈택스] → [전자세 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임대인이 실제 전력을 사용한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 니다.

② 발급과 전송시기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

예) 2023.9.1.(금) 발급한 경우	'23.9.4.(월)까지 전송(9.2.은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로 순연)	정상
	ツ395 ~ ツ41ツ5かみ	
	'24.1.26. 이후 전송	미전송

3.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 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경우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 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 혜택과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의 혜택은?

- ㅇ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 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 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7월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간 1백만원 한도,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23.7.1.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발급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71.5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 고기한 내 전송 예) 23.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전송	0.3%	해당없음
전송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 고기한 내 미전송 예) 23.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미전송	0.5%	

-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 없음
-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 2019.2.12.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에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p20참고)
 - 1) '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3.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1기 확정신고 시 발급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2기 신고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와 공동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다만,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 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른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 또한, 2021년 2월부터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가능한 공동인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있습니다.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홈택스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동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인증기관이 해당 공동인증서를 홈택스 적용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동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 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방법
 - ①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
 - ②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업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전자세금계산서 용 공동인증서] 발급(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은행에 별도 문의)

4. 금융용 또는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금융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
- 금융용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업무 준칙에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는 사업장별로 있어야 하나요?

-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동인 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개별적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총괄납부사업자는 지점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 총괄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관리하여야 합니다.

7. 공동인증서 복사는 어떻게 하나요?

 ○ 공동인증서 복사는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사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백업·복구] 메뉴의 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무엇인가요?

- 공동인증서가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보안카드 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인증이 비활성화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홈택스 로그인할 때 사용한 공동인증서가 발급단계 인증 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할 때는 여러 종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시에는 발급가능한 공동인증서만 보여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사업자범용)를 이용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0. 새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은?

○ 홈택스 [공인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전자세금계산 서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은 로그인을 위한 등록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종사업자별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예,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의 홈택스 부서사용자 ID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종사업장별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의해 생성·발급·전송된 파일을 말합니다.
 - * 제정된 표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에 맞게 생성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홈택스에 전송될 경우 오류로 반송하게 됩니다.

2.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3.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 가능

4.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ㅇ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 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음
 -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의 발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음(5월 5일 이전으로는 수정발급 가능함)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나요?

- 발급이 불가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수탁자 공동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전송하면 됩니다.
-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전송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개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자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9.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구별합니다.(전자분만 조회됨)
-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며,종이세금계산서 에 없는 승인번호(영어와 숫자 24자리)가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는 것 이 필요합니다.

⑥ 수정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취소 할 수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 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 당초 2023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3년 3월 3일에 '기 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3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나 '0'으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4.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이후인 경우(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등)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예)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자인 경우,
 - 1) 2023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2023년 7월에 착오기재를 발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 2) 2023년 6월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23년 7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6.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대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 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매입자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입자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 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8.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변동사유가 발생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예) 1월 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2월 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월 1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차액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3월 1일) 발급

☞ (-)1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주의

9.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예)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30,000원 발급

10.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1.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예) 지점(공급자)이 7월 5일 재화 공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 7월 31일 지점이 폐업하고, 8월 15일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476(2009.04.07.), 법규과-839(2009.06.23.)]

* 환입 : 출고(반출)된 재화가 다시 들어오는 것(반품)

1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계약해지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의 해제 :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임
 - 계약의 해지 : 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제와는 다른 것임

14.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삼46015-12005, 2003.12.22.)

15.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초 발급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거래 건에 대하여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 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 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당초 발급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이 아닌 [기 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 요.

- 전자세금계산서 □8 P鍾_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대 상이 아닙니다.
- 17.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매출 아닌가요?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18. 5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월 거래 건은 7월(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7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 해 1월(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 19. '23.6.26. 공급한 재화가 '23.7.14. 일부 반품이 되어 '23.8.10.에 [환입]으로 수정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 공급일인 '23.6.26.로 발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화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화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3.7.1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환입] 수정발급 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자동 발급,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3.7.14.로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로 발급합니다.
- 공급시기가 7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하면 됩니다.
- 20.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 ㅇ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 1.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 총합계로 기 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으며,
-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2. 합계표 구분기재를 잘못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할 것을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매입자로부터 발급방법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시 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전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인 발급·전송책임은 모두 매출자에게 해당됩니다.
- 매출자가 자신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사업자들은 이것을 승인이라 함)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가 완성되므로 매출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발급과정에서 매입자가 내용을 작성했을 뿐입니다.
- 전송은 매입자의 발급시스템에서 하여야 하므로, 매출자는 전송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관리하여야 합니다.

5.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지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는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집단에너지 공급·방송 사업부문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하 되 동 사업부문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대해 지연발급·전송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전자서명이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이미 종이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 서 단순히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공급시기에 발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❸ 전자계산서(면세) 제도

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 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 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 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78	나어설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O,×)		
구분	사업형태 -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0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 서 의무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 래가 없음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0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 액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	0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 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 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 ②) >

구 분	내 용
1호	-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호	-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호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 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7억원	4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억 원 이상
사례2	3.5억원	3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 B사업장 발급의무 ×* A사업장 수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 수입금액은 1억원 미만
사례3	1.5억원	0.9억원	0.6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x* 각각의 사업장 모두 1억원 미만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상기 법인들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0조 ③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전자계산서를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 할 수 있는지?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8.1.1. 거래 건부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 (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6.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2023.9.10.은 일요일)

- ◎ (사례 1) '23.8.1. ~ '23.8.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 ◎ (사례 2) '23.8.1. ~ '23.8.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 ◎ (사례 3) '23.8.1. ~ '23.8.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7.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 발급의무자별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역	1% 가산세 부과시기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최초 시행)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19.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19.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22.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	'22.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23.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24.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	'24.7.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

-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발급의무 개시기간은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임
- 다만,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9.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 서에 대해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70를 준용합니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등입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 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10.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간이과세자도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회신 : 소득46011-3261, 1999.8.18.

11.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5건 발급도 가능합니다.

1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발급의무 자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법인 : 개업일 ~ 폐업일 - 개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 그 다음해 6.30 (수정신고 등의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 기간)
'16.1.1.이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발급의무 대상자	10억원 이상 개인	1.1. ~12.31
'17.1.1.이후	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다
발급의무 대상자	10억원 이상 개인	음해 1.1. ~12.31
'19.7.1.이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발급의무 대상자	3억원 이상 개인	7.1. ~ 다음해 6.30
'22.7.1.이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발급의무 대상자	2억원 이상 개인	7.1. ~ 다음해 6.30

'23.7.1.이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발급의무 대상자	1억원 이상 개인	7.1. ~ 계속*
'24.7.1.이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발급의무 대상자	8천만원 이상 개인	7.1. ~ 계속*

13.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 국세청 전송이란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별 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으나.
 - 발급대행사업자(ERP, 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ㅇ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계산서는 적법한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오류수정 절차 를 거친 후, 국세청 홈택스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전송기한이 순연됩니다.
 - * 발급일자가 '23.8.25.(금)인 경우 '23.8.26.은 토요일이므로 '23.8.28.(월)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1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 전자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연전 송과 미전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 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 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 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 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 법령근거 (개인) 소득세법 \$81의10 ①5,6호, (법인) 법인세법 \$75의8 ①5,6호
-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입니다.(소득세법 § 5, 법인세법 § 6)
 - 개인과 법인의 지연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A가 '23.3.15. 전자계산서 발급
 - → <u>'23.3.17.</u> ~ <u>'24.1.25.</u>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u>'24.1.26. 이후</u>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2.7.1.~'23.6.30.) B가 '23.1.3. 전자계산서 발급
 - → <u>'23.1.5.</u> ~ <u>23.7.25.</u>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u>'23.7.26. 이후</u>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 전송이 됨

16.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 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 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	-
발급	지연발급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 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 2%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이후)	
전송 -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	-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 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자별로 다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所法 제81조의10 및 所令 제147조의6)
-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1%	0.5%	0.5%	0.3%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3%	1%	1%	0.5%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개정)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 : '23.7.1.부터 1억원 이상, '24.7.1.부터 8천만원 이상

17. 전자계산서 발급위반 가산세와 전송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 전자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법 \$81의10 ①5,6호, 법인세법 \$75의8 ①5,6호

18.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개인 및 법인 사업자별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기준이 다소 다르며, 가산세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발급· 그전송위반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 발급위반 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에 한하고, 전송위반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
 - *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구분	발급위반 가산세	전송위반 가산세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에 부과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한함

19.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 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 용	가산세율
매출·매입 처별 계산서합	미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계관시합	지연제출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하게표	미제출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서합계표	지연제출	•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

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국세기본법 제49조)

-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 종이 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 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1. 수정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 일합니다.

✔ 홈택스 매뉴얼 꾸요 상담사례

●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 1.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 의 경우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전환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 1) 법인사업자 :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 사업자·세무대리인]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자 :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 개인]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휴 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하여 가입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홈택 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아이디(ID)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ㅇ 아이디를 변경하시려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회원 아이디는 가입정보 관리 및 보안을 위해 중요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디(ID)/비밀번호(Password)찾기]에서 본인확인 후 아이디 일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비밀 번호는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 사용자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아이디/비밀번호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의 암호를 모르는 경우나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은행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최초 회원가입 시 사용한 공동인증서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추가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가 갱신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 상단 [인증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사업장별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회원으로 한번만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자 전환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발급단계 인증 시 사업장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필요)

6. 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만 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보안카드를 이용한 발급은 로그인 방법이 다릅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아이디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번호(난 수표)를 입력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7.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서는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여러 명이 동시접속이 필요하다면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여 사용자별로 아이디를 생 성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 여러 명이 하나의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아이디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 아이디는 사업자 아이디와 별도로 하나의 아이디만 신청 가능하며,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는 보안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9. 부서사용자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우측 상단에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클릭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 메뉴를 선택하여 아이 디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먼저 "대기"상태이므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My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존 부서사용자가 확인됩니다.
- 승인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를 "사용"으로 변경하면 부서사용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장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부서사용자 관리]에서 [임시 비밀번호 발송]을 체크하여 [비밀번호 발송]을 클릭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10. 부서사용자를 신청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사업장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My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존 부서사용자가 확인됩니다.
- 해당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를 "사용"에서 "탈퇴"로 변경 후 [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가 개인용(금융용, 범용) 공동인증서는 안되고 사업 자용 공동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급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공동인증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내재된 사업용으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2. 홈택스 회원정보 및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로그인한 후 상단의 [My홈택스] 클릭하여 [회원정보관리]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❷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나요?
- 현재 홈택스에서는 표준화·과부하 등의 문제로 거래명세서·견적서 등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16줄까지 '품목란' 입력이 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 사업자의 인적사항 정보는 사업자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으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 홈택스에 반영되며 이메일 주소는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기본사항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할 수는 없나 요?

- 매입자를 거래처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 정보보호를 위해서 자동생성되지 않으므로 직접입력 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최초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관 리에 등록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거래처정보 변경 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거래처정보]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수정

4. 거래처 등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거래처 일괄등록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일괄적으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송하는 방법은?

- 이 메일 재발송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재발송 방법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좌측 선택박스를 선택한 후 [재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 '재발송'은 수정발급 없이,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단지 다시 보내주기만 하는 것으로 당초 주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할 경우 이메일 주소만 수정하여 재발송하면 됨
 -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거래처 관리]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 서] → [거래처정보]에서 해당거래처를 클릭하여 메일주소를 수정하면 이후 발급분부터는 변경된 정보로 계 속 발급 가능함

6. 홈택스에서 일괄발급은 최대 몇 건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 일괄발급은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건을 입력하여 일괄 발급하는 것

- 으로,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엑셀 등을 업로드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10건까지 화면에 입력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엑셀양 식 등을 업로드하는 경우 최대 100건을 입력·업로드하여 50건씩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100건 초과에서 1,000건까지 입력・업로드는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

7. 홈택스의 반복발급과 복사발급은 어떻게 다르나요?

- 반복발급은 다른 기재사항은 동일하나 매입자만 다른 경우 사용하는 것이며.
- 복사발급은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일부만 수정하여 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8. 홈택스의 발급보류 기능은 무엇인가요?

- 발급보류 기능은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임시 저장하고, 그 사실을 매입자에게 알려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발급보류 기능을 사용할 경우 착오발급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발 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보류 기간은 당일에 한합니다.

9. 매출자·매입자는 발급보류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애출자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보류/예정 목록조회] → [발급보류 목록조회]에서 조회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예정 목록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발급보류분은 당일에 한하여 조회되며, 익일 0시에는 삭제되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종사업장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시 종사업장을 선택하는 창이 뜨며 거래처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0번이 주사업장이고 1,2…가 각 종사업장임)

11. 품목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나요?

○ 홈택스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내품목조회] 메뉴에서 일괄등록 또는 건별등록을 클릭하여 품목명, 규격, 비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12. 거래처 상호 및 이메일 등 거래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거래처 관리] 또는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정보]에서 해당 거래처

를 클릭 후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1. ERP 또는 ASP 발급분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매출자. 매입자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 * 매출자가 ERP나 AS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자·매입자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합계표 조회는 전송일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
- 2.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으므로 발급 후 바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홈택스 외의 타 시스템에서 발급한 경우 전송을 하여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매출자에게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홈택스에서 목록조회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왜 차이가 나요?
-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합계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및 ASP 등을 통해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당일 자료로 구축되어 목록조회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되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 4.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없나요?
-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권한 동의를 하여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본지점·총괄납부 조회권한 관리] → [본지점 조회권한 동의 및 취소]에서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수 있도록 권한 동의를 하였을 때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발급(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후 해당목록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되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건별상세조회] 메뉴에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는 기간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한가요?

- 2010년 이후 발급(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1개월 이내로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종류(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일반, 영세율, 위수탁, 수입 등)를 선택하거나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검색이 더욱 용이합니다.
- 월별·분기별로 조회를 하시려면 월/분기별 목록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7.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가입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만 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개인 회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사업 자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 스이용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입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수취총액만 조회가능하고 목록조회는 불가합니다.

8. 수정발급이력조회 화면은 무엇인가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력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당초 발급 건에 대해 2014년 1월 이후 수정발급 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 [수정 발급이력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려는데 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오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는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손택 스(모바일 앱) 이용 시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홈택스 기타

1. 홈택스에서 "제3자 발급사실 조회"는 무엇인가요?

- '제3자 발급사실 조회'란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에 대해 국세청에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승인번호·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일자를 입력한 경우 "발급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이 구분하기 어렵거나,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증빙자료 확인 시 활용

2.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보기'란 무엇인가요?

-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을 서식 형태로 읽을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입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XML파일을 뷰어로 보는 경우에는 XML 파일에 전자서명이 없으므로 '전자서명이 위·변조된 세금계산서입니다'고 표기되며, XML원본 파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에 첨부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이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 사업자로 회원가입 할 경우 생성할 수 있는 메일 계정으로 홈택스 및 민간사업자를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메일만 수신할 수 있는 전용메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전용메일 예시) test@hometax.go.kr

4.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주소는 변경할 수 없으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수신전용메일 신청] 메뉴에서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전용메일 주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메일계정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인데 전송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업자로 회원가입 후 [My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상태를 "대기"에서 "사용"으로 변경한 후 초기화된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에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홈택스 메일발송 등

1.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주소 입력오류나 수신함이 가득 차서 추가 수신이 차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메일계정의 수신차단 내역 중에 홈택스 메일이 들어있다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보안수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수신함에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보안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 포털사이트의 메일인 경우에는 보안수준을 낮춰주시고 회사용 메일인 경우에는 메일을 관리하는

-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홈택스에서 발신되는 메일을 차단하지 않게 설정·변경요청 하시면 됩니다.
- 각 포털사이트 메일함의 환경설정 및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유형별 조치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aum이나 Naver 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청구서함 수신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청구서함에 저장됩니다.
- 2.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거래처에 메일이 수신되지 않고 메일발송 결과가 휴면계정으로 확인되는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신 주소(hometaxadmin@homtax.go.kr)가 수신차단 목록 에 있는 경우에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 수신차단 목록에 해당 메일주소가 있으면 사용하는 메일 계정에 따라 메일발송결과가[메일계정오류(휴면계정)]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메일 환경설정 등에서 [수신허용/차단] 메뉴를 확인하여 차단된 경우에는 홈택스 발신주소를 제거하고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옵션「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ometax.go.kr 등록하면 됩니다.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팝업창에서 *.hometax.go.kr 를 추가 → 닫기
 브라우저 환경 자동설정하기 (브라우저 종료 후 홈택스 재접속 필요)
- 통합설치프로그램 화면에서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 \circ 통합설치프로그램 \to [선택] 탭 \to MAGIC-PKI, MAGIC-XML \to 다운로드 \to 다운로드된 파일실행
 - * 홈택스 공동인증서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고객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품 설치 확인 중입니다." 메시지 창이 나오는 경우
 - * 발급 화면에서 "미설치 파일 존재합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창이 나오는 경우
 - * 목록조회 화면에서 조회기간 날짜가 빈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
 - * 홈택스 로그인 클릭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VeraPort)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베라포트 설치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메시지창이 나오는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조치하면 됩니다.
- 4.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이 특정한 거래처에서 발급한 것만 받지 못하고 있고 메일 발송결과는 '수신거부'로 확인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잘못 기재하여 이메일 수취자가 관련 없는 메일을 수신한 경우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수신거부'를 한 공급자의 메일을 받고자 하면 해당 거래처에서 받은 이전 이메일을 확인하여 [본 메일이 수신인과 관련 없는 경우 수신거부/해제(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에서 [수신거

부/해제(여기)]를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 5. 보안모듈관리 프로그램 설치에서 설치되지 않고 화면이 멈춰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팝업창 중간에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수동설치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창을 모두 닫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or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Veraport20(보안모듈 관리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다시 홈택스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클릭하면 자동설치 됩니다.
- 6.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출력] 또는 [합계표] 조회 후 [명세서 출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력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 및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하여야 합니다.
- 다운로드 방법은 홈택스 하단 → [통합설치프로그램] → 보고서(REXPERT) 설치파일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실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 7. 통합설치 프로그램 안내 화면에서 설치완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통합설치 프로그램에서 필수 탭의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클릭해서 실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설치가 안되거나 설치완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모든 인터넷 창을 닫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or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 후 재설치하시고 재설치 후 새로고침(F5) 하거나 인터넷 창을 닫고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